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50명(4급 또는 5급 7명, 5급 29명, 6급 79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210명(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근로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49명(5급 39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증원하면서 이 중 410명(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경기도의 급증하는 노동행정 수요 대응을 위하여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고, 울산광역시 지역의 지역별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울산동부지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2명) 중 1명(4급 1명)은 증원하며, 2명(5급 2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충청남도 서북부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1명, 5급 3명)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심판 업무의 신속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0명(6급 25명, 7급 2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

전보건정책실 1개 과,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국 및 안전보건감독국 3개 과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지방고용노동관서 13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5급 1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9명(6급 27명, 7급 44명, 8급 18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9명(6급 56명, 7급 76명, 8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5명(7급 22명, 8급 21명, 9급 22명) 중 19명(7급 6명, 8급 6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고, 46명(7급 16명, 8급 15명, 9급 1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고용노동부에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6급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56명(5급 2명, 6급 27명, 7급 146명, 8급 104명, 9급 77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6명(6급 2명, 7급 4명)을 각각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감독관 증원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조직체계를 정

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부서 36과, 4팀 및 근로감독 부서 39과를 신설하면서 산업안전감독 및 근로감독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6개 과를 신설하며, 울산동부지청 소속 1개 고용센터 및 1개 과를 신설하며, 서산지청 소속 3개 팀을 3개 과로 하면서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주노동자 대규모 유입 등 노동 환경과 구성 변화에 따라 감독 업무의 현장 수용성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8명(8급 2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간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기준정원 3명(6급 3명)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으로 이체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1명(9급 1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기준정원 2명(9급 2명)을 각각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며, 그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정원 1명(7급 1명),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 정원 2명(7급 2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정원 1명(7급 1명)을 감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하향 조정한 정원 136명(행정주사보 59명, 행정서기 74명, 행정서기보 3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 자산운영팀, 및 국민취업지원 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5급 직렬에 기록연구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6. ~ 12.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센터 및 산재예방지도팀”을 “노동기준조사센터 및 산재예방감독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개선지도1과”를 “노동기준조사1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광역근로감독과장,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을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소장,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 중대재해수사과장,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으로, “산재예방지도팀장”을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노동기준조사1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근로개선지도3과장 또는 광역근로감독과장”을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노동기준조사3과장 또는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건의 처

리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체불발생 사업장 전수조사 실시

제1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을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으로,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를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을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상담 및”을 “상담,”으로, “지도를”을 “지도 및 전수조사·감독”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을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으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을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14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근로감독과장”을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을 “정기·수시·재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

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개 이상 관할 지청에 걸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청원형 감독의 실시
4.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감독 업무 관련 협력 사업
-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삭제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과약, 원인조사 및 조치(원인조사는 중대(산업)재해 외의 사항에 한함)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용자

10. 삭제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운영
1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관내 산업안전 정책 총괄, 지역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마련
19. 산업재해 예방 활동, 교육, 홍보, 지도 총괄
20. 연간 안전보건 감독계획 수립 및 일반감독 중 주제별 감독 총괄 및 실시
21.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업무 총괄

22. 페트롤 예방 점검

23. 산업재해조사표 및 은폐 업무

24. 지방정부 위임 관련 총괄 관리 및 협의 조정(관내 광역시도청 위임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협의 지원)

25. 부서간 상호 감독(종류 불문) 지원 및 분배 등에 관한 조정 및 협의

2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4항(중전의 제1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을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으로,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사업장”을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으로, “분장한다”를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대재해수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7호와 관련된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4조제15항 및 제16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

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조사

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6.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

7. 일반감독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기획감독 총괄 및 실시
제14조제16항(중전의 제15항)제1호 중 “제13항제2호”를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3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를 “제15호, 제18호부터 제24호 및 제2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5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7호

제14조제16항(중전의 제15항)제3호 중 “제14항제11호”를 “제13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항제7호”를 “제17항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6항제8호”를 “제17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을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으로,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을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중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재지도과장”을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을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의4부터 제11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활동, 교육, 홍보, 지도
- 11의5. 건설업 감독 총괄 및 실시, 건설업 패트롤 점검
- 11의6. 건설업 안전일터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 및 포상금 지급
- 11의7. 건설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 등

제14조의2 본문 중 “강릉지청장·태백지청장·영주지청장·안동지청장·영월출장소장 및 서산출장소장”을 “강릉지청장·태백지청장·영주지청장·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기지청장·강원지청장”을 “강원지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를 “노동기준조사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을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

를 포함한다), 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근로개선지도과장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장”을 “노동기준조사과장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노사상생지원과장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같은 항 제1호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권한은 제외한다)의 사항 중 해당 지청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울산지청의 노사상생지원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제7항(중전의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노사상생지원과장은”을 “노동기준감독과장은”으로, “관할구역 사업장”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0항제1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2항제2호에 관한 사항

⑧ 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

할구역에 관한 제14조제14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제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강원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장은 강원·강릉·원주·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제14조제14항제7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제15조제9항(중전의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14항제11호”를 “제14조제13항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4조제16항제7호”를 “제14조제17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4조제16항제8호”를 “제14조제17항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제13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25호에 관한 사항(제14조제13항제23호와 관련하여 광역 시도청 소재 관서는 총괄 관리 및 협의 지원, 그 외 관서는 관할 사업장 감독 관련 협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단, 광역 시도청 소재 관서에서 필요시 소속 지청 관할 사업장 감독 관련 협의 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6. 제14조제15항제3호, 제6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을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으로, “근로개선지도팀장”을 “노동기준조사팀장”으로,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를 “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울강남·경기·성남·창원·울산·천안 지청의 근

로개선지도과장”을 “서울강남·성남·창원·울산·천안 지청의 노동기준조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2호) 가목 중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를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4조제10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4조제12항제2호에 관한 사항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삭제

제15조제6항제4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노사상생지원과를”을 “노동기준감독과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제9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을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산재예방감독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정부·고양·성남·안양·평택·인천북부·울산·대구서부·포항·전주·여수·청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제10항(중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산재지도과장은”을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3”을 “제14조제17항제1호,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3부터 7”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제16항제7호”를 “제14조제17항제7호”로 한다.

제23조제5항 중 “6급”을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267명”을 “287명”으로, “125명)”을 “125명, 8급 20명)”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중 총계 “650”을 “652”로, 일반직 계 “643”을 “645”로 하며, 행정사무관 115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0”를 삭제, 전산주사 “9”를 “10”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652”를 “653”으로, 일반직 계 “645”를 “646”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133 다음에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51”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0”를 삭제, 전산주사 “9”를 “10”으로,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1”을 “40”으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973”을 각각 “8,008”로,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1”을 “4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11”로, 행정사무관 “102”를 “141”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9”를 “20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46”으로, 행정주사 “978”을 “1,123”으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93”을 “21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34”를 “399”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94”를 “104”로,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9”를 “49”로, 행정주사보 “1,061”을 “1,239”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

업상담주사보 “432”를 “572”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08”을 “50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35”를 “155”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9”를 “49”로, 행정서기 “412”를 “486”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22”를 “720”으로, 행정서기보 “132”를 “145”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21”을 “891”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978”을 각각 “8,016”으로, 고위공무원단 “6”을 “7”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1”을 “43”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를 “11”로, 행정사무관 “131”을 “170”으로,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93”을 “207”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5”를 “46”으로, 행정주사 “882”를 “1,030”으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13”을 “239”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34”를 “399”로,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94”를 “104”로,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39”를 “49”로, 행정주사보 “1,046”을 “1,224”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02”를 “642”로,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08”을 “500”으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35”를 “155”로,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39”를 “49”로, 행정서기 “483”을 “557”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80”을 “778”로, 행정서기보 “135”를 “148”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673”을 “743”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행정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보 1”을 신설하고, “사무운영서기보 1”를 삭제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5”를 각각 “34”로, 행정주사 “7”을 “10”으로 하며, 행정주사 10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7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보 4”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약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2 다음에 “행정서기보 2”를 신설, 사무운영서기보 “3”을 “1”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8”을 각각 “34”로 하고, 행정주사 9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를 신설하며, 행정주사보 9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보 4”를 신설한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제12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서초구 및 동대문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용인시 및 화성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 및 연제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수성구·북구·군위군,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 및 청도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제주특별자치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 및 금산군

2. 지청 및 출장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강남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 및 강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남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 및 양천구
서울북부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봉구·강북구·중랑구 및 노원구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2호, 별표 1의2 중 울산동부지청 관련 내용은 2026년 4월 29일까지는 울산지청으로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0, 별표 11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별표 10의2, 11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운용하고 있는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 또는 통계주사보 1명), 별표 1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2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5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 별표 17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 2명)으로 분다.

서울관악지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의정부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고양지청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성남지청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안양지청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안산지청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평택지청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및 안성시
인천북부지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부천시청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강원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릉지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 및 고성군
원주지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및 횡성군
태백지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동부지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북부지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창원지청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합안군 및 의령군
울산지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주군
울산동부지청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중구 및 북구

양산지청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진주지청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함양군 및 남해군
통영지청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및 고성군
대구서부지청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남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령군 및 성주군
포항지청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구미지청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영주지청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 및 봉화군
안동지청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전주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익산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및 김제시
군산지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목포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여수지청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청주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및 증평군
천안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및 예산군
충주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및 단양군
보령지청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및 부여군
서산지청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서산시 및 태안군

[별표 1의2]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제14조제13항 및 제15조제8항 관련)

1. 제14조제13항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15조제8항 관련

명칭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서울강남지청의 관할구역
서울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동부지청 및 서울북부지청의 관할구역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남부지청·서울서부지청 및 서울관악지청의 관할구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1·2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의정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의정부지청의 관할구역
고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	고양지청의 관할구역
성남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성남지청의 관할구역
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안양지청의 관할구역
안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안산지청의 관할구역
평택지청 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의 관할구역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충부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인천북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인천북부지청의 관할구역
부천시청 중대재해수사과	부천시청의 관할구역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	강원지청·원주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구역
강릉지청 중대재해수사과	강릉지청 및 태백지청의 관할구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부산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부산동부지청 및 부산북부지청의 관할구역
울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울산지청 및 울산동부지청의 관할구역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창원지청의 관할구역
양산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양산지청의 관할구역
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진주지청 및 통영지청의 관할구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및 대구서부지청의 관할구역
구미지청 중대재해수사과	구미지청·영주지청 및 안동지청의 관할구역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	포항지청의 관할구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제외한다)
전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전주지청·익산지청 및 군산지청의 관할구역
목포지청 중대재해수사과	목포지청의 관할구역
여수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여수지청의 관할구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구역
청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청주지청의 관할구역
천안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의 관할구역
충주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충주지청의 관할구역
보령지청 중대재해수사과	보령지청 및 서산지청의 관할구역

2. 제14조제13항제7호 관련

명칭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서울동부지청·서울서부지청·서울남부지청·서울북부지청 및 서울관악지청의 관할구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1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고양지청·성남지청·안양지청·안산지청 및 평택지청의 관할구역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충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및 부천시청의 관할구역
강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	강원지청·강릉지청·원주지청·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구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부산북부지청·창원지청·울산지청·울산동부지청·양산지청·진주지청 및 통영지청의 관할구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포항지청·구미지청·영주지청 및 안동지청의 관할구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익산지청·군산지청·목포지청 및 여수지청의 관할구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주지청·천안지청·충주지청·보령지청 및 서산지청의 관할구역

[별표 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12조제1항 단서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명칭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서울고용센터 2.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1. 수원고용센터 2. 용인고용센터 3. 화성고용센터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화성시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 부산고용센터 2. 부산사하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1. 대구고용센터 2. 대구강북고용센터 3. 대구동부고용센터 4. 경산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1. 광주고용센터 2. 광주광산고용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 대전고용센터 2. 공주고용센터 3. 세종고용센터 4. 논산고용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공주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논산시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명칭	위치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지청	1. 서울동부고용센터 2. 성동광진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남부지청	1. 서울남부고용센터 2. 서울강서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북부지청	1. 서울북부고용센터 2. 강북성북고용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부지청	1. 의정부고용센터 2. 구리고용센터 3. 남양주고용센터 4. 동두천고용센터 5. 양주고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시
고양지청	1. 고양고용센터 2. 파주고용센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
성남지청	1. 성남고용센터 2. 경기광주고용센터 3. 이천고용센터 4. 하남고용센터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하남시
안양지청	1. 안양고용센터 2. 광명고용센터 3. 의왕고용센터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의왕시
안산지청	1. 안산고용센터 2. 시흥고용센터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시흥시
평택지청	1. 평택고용센터 2. 오산고용센터 3. 안성고용센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안성시
인천북부지청	1. 인천북부고용센터 2. 인천서부고용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서구
부천시청	1. 부천고용센터 2. 김포고용센터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김포시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릉지청	1. 강릉고용센터 2. 속초고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백지청	1. 태백고용센터 2. 삼척고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부산광역시 북구
창원지청	1. 창원고용센터 2. 마산고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양산지청	1. 김해고용센터 2. 양산고용센터 3. 밀양고용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밀양시
진주지청	1. 진주고용센터 2. 하동고용센터 3. 거창고용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거창군
통영지청	1. 통영고용센터 2. 거제고용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거제시
대구서부지청	1. 대구서부고용센터 2. 대구달성고용센터 3. 칠곡고용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포항지청	1. 포항고용센터 2. 경주고용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북도 경주시
구미지청	1. 구미고용센터 2. 김천고용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영주지청	1. 영주고용센터 2. 문경고용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문경시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전주지청	1. 전주고용센터 2. 정읍고용센터 3. 남원고용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익산지청	1. 익산고용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 김제고용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군산지청	1. 군산고용센터 2. 부안고용센터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목포지청	1. 목포고용센터 2. 해남고용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해남군
여수지청	1. 순천고용센터 2. 여수고용센터 3. 광양고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청주지청	1. 청주고용센터 2. 옥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천안지청	1. 천안고용센터 2. 아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주지청	1. 충주고용센터 2. 제천고용센터 3. 음성고용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북도 음성군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서산지청	서산고용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별표 3]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제12조제2항 관련)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청(다만, 부천시청은 제외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청 또는 출장소(다만, 부천시청을 포함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소재하는 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별표 4]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관련)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서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수원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용인고용센터, 화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1과, 중대재해수사2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충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부산사하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대구강북고용센터, 대구동부고용센터, 경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광주광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원과, 직업능력개발과), 공주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예방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2.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구분	과명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성동광진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서울남부지청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강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강북성북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구리고용센터, 남양주고용센터, 동두천고용센터, 양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고양지청	고양고용센터, 파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경기광주고용센터, 이천고용센터, 하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안양지청	안양고용센터, 광명고용센터, 의왕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안산지청	안산고용센터, 시흥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평택지청	평택고용센터, 오산고용센터, 안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고용센터, 인천서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부천시청	부천고용센터, 김포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강릉지청	강릉고용센터, 속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원주지청	원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태백지청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노동기준조사팀, 산재예방감독팀
영월출장소	영월고용센터, 지역협력팀, 노동기준조사팀, 산재예방감독팀
부산동부지청	부산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부산북부지청	부산북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마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울산지청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울산동부지청	울산동부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 양산고용센터, 밀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진주지청	진주고용센터, 하동고용센터, 거창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통영지청	통영고용센터, 거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대구달성고용센터, 칠곡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포항지청	포항고용센터, 경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구미지청	구미고용센터, 김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영주지청	영주고용센터, 문경고용센터, 지역협력팀, 노동기준조사팀, 산재예방감독팀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지역협력팀, 노동기준조사팀, 산재예방감독팀
전주지청	전주고용센터, 정읍고용센터, 남원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김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군산지청	군산고용센터, 부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목포지청	목포고용센터, 해남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여수지청	순천고용센터, 여수고용센터, 광양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청주지청	청주고용센터, 옥천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천안지청	천안고용센터, 아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
충주지청	충주고용센터, 제천고용센터, 음성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서산지청	서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노동기준조사과, 노동기준감독과, 산재예방감독과

※ (비고) 2026년 4월 29일까지는 울산지청에 두는 과는 울산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감독과, 중대재해수사과, 산재예방감독과, 건설산재예방감독과로 한다.

[별표 10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총계	8,007
일반직 계	8,007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
행정사무관	14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3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1,123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19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99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1
직업상담주사	4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04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9

행정주사보	1,239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572
직업상담주사보	31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00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8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5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9
행정서기	486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720
직업상담서기	226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145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891
직업상담서기보	406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32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기록연구사	6
운전서기보	47
사무운영서기보	29
방호서기보	31

[별표 11의2]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총계	8,015
일반직 계	8,015
고위공무원단	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1
행정사무관	170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07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46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
행정주사	1,030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239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99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11
직업상담주사	4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설주사	104	기록연구사	6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9	운전서기보	47
행정주사보	1,224	사무운영서기보	29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642	방호서기보	31
직업상담주사보	31		
전산주사보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00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8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5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9		
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		
행정서기	557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778		
직업상담서기	226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4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8		
방호서기	1		
행정서기보	148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743		
직업상담서기보	406		
행정서기보 또는 통계서기보	32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2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432	101	331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431	100	33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70	33	137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117	14	10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1	9
행정전문관	4	4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436	105	331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435	104	331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7	25	22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71	35	136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120	15	10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7	2	5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8	1	7
행정전문관	4	4	

[별표 1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6조관련)

1. 고용노동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노동정책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	5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2027년 3월 31일까지
2)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보건보상정책관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3) 산업안전보건정책실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6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4)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1명 (고위공무원단 나급 1명)	2028년 9월 30일까지
5) 노동정책실 근로감독협력과	8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2028년 9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운영	3명 (5급 2명, 6급 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6급 3명, 7급 12명, 8급 10명, 9급 5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2) 고용센터 초기상담 (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급 14명, 8급 8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6급 10명, 7급 27명, 8급 31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4)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6급 31명, 7급 44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300명 (6급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6) 근로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410명 (6급 158명, 7급 185명, 8급 54명, 9급 13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7) 산업안전감독 (지방고용노동관서)	210명 (6급 75명, 7급 115명, 8급 20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8) 조정 및 심판업무 (노동위원회)	50명 (6급 25명, 7급 25명)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8조 관련)

1. 제28조제9항 관련 한시정원(준속기한: 2026년 4월 12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2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3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4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고용센터, <u>근로개선지도센터</u> 및 <u>산재예방지도팀</u> 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u>근로개선지도1과</u> 에 제8항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① ----- ----- <u>노동기준조사센터</u> <u>및 산재예방감독팀</u> ----- ----- ----- ----- <u>노동기준조사1과</u> ----- ----- -----
② 고용센터 소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행정사무관·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부정수급조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u>근로개선지도1과장</u> , <u>근로개선지도2과장</u> , <u>근로개선지도3과장</u> , <u>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u> , <u>광역근로감독과장</u> , <u>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u> , <u>산재예방지도과장</u> 및 <u>건설산재지도과장</u> 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	② ----- ----- ----- ----- ----- ----- ----- ----- <u>노동기준조사1과장</u> , <u>노동기준조사2과장</u> , <u>노동기준조사3과장</u> , <u>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u> , <u>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u> , <u>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u> , <u>중대재해수사과장</u> , <u>중대재해수사1과장</u> , <u>중대재해수사2과장</u> , <u>산재예방감독과장</u> 및 <u>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u> 및 <u>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u>

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되,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1과장, 근로개선지도2과장 및 근로개선지도3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9항 각 호와 관련되는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 4. (생략)
5. 임금채불 예방 및 채불임금 청산계획의 수립·시행(임금채불 관련 노동분쟁에 관한 상담 및 채불임금 청산 지도를 포함한다)

6. ~ 20. (생략)
- ⑪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은 -----
-----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의 -----.
----- 노동기준조사1과장, 노동기준조사2과장 및 노동기준조사3과장-----.

1. ~ 4. (현행과 같음)
5. -----
----- 상담, ----- 지도 및 전수조사·감독을 -----

6. ~ 20. (현행과 같음)
- ⑪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관할구역 -----.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 4. (생략)
- ⑫ 광역근로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관련 정기감독(파견·사용업체에 대한 점검, 불법파견 점검, 비정규직 차별 점검 등을 말한다) 계획 수립·시행
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사업장에 대한 수시감독 계획 수립·시행

<신 설>

4. ~ 6. (생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⑫ 광역노동기준감독과장-----.

1. (현행과 같음)
2. -----

----- 정기·수시·재감독 및 특별감독 -----

3. 2개 이상 관할 지청에 걸치는 사업장에 대한 신고형·청원형 감독의 실시

4. 지방자치단체와의 근로감독 업무 관련 협력 사업

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⑬ 광역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삭제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원인조사는 중대(산업)재해 외의 사항에 한함)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용자
10. 삭제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운영
1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1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

치에 관한 사항

- 1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 18. 관내 산업안전 정책 총괄, 지역 위험요인 분석 및 대책 마련
- 19. 산업재해 예방 활동, 교육, 홍보, 지도 총괄
- 20. 연간 안전보건 감독계획 수립 및 일반감독 중 주제별 감독 총괄 및 실시
- 21. 안전일터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업무 총괄
- 22. 패트롤 예방 점검
- 23. 산업재해조사표 및 은폐 업무
- 24. 지방정부 위임 관련 총괄 관리 및 협의 조정(관내 광역시도청 위임 업무에 대한 총괄 관리 및 협의 지원)
- 25. 부서간 상호 감독(종류 불문) 지원 및 분배 등에 관한

조정 및 협의

- 2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⑭ 중대재해수사과장(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을 포함한다.)-----
-- 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분장하며,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수사1과장, 중대재해수사2과장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수사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 중 제7호와 관련된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 <삭 제>
- 1. 삭 제
 -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 3. 삭 제
 - 4. ~ 7. (생략)
- <신 설>
- 4. ~ 7. (현행과 같음)
 - ⑮ 산재예방감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 1.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에

⑬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서 신설>

- 1. 삭 제
 -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광역사업에 관한 사항
 - 3. 삭 제
 - 4. ~ 7. (생략)
- <신 설>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조사
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6.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
7. 일반감독 중 중대재해 발생

⑭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건설산재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수사
2.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신고 처리 및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
4.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5. 사업장의 재해발생 상황파악, 원인조사 및 조치
6.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확립에 관한 지도 및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승인

사업장 감독, 기획감독 총괄 및 실시

<삭 제>

-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사회 보고·승인에 관한 사항
-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 지원
- 9.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의 용자
- 10. 산업재해조사기동반의 편성 및 운영
- 11.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유해위험작업교육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인가·허가·승인·확인·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 12. 삭제
- 13.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등록
- 14. 명예산업안전감독관(건설업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외한다)의 위촉·운영

- 14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금지와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제3호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과 관련된 지도·조사
- 14의3.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소속 지청(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 지청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4의4.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구역 내 둘 이상의 소속 지청 및 출장소에 걸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계획 수립·시행
- 14의5.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계획,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에 대한 지원
- 14의6.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사고의 재해조사·감독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4의7.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확인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상태 평가 및 변경·재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⑮ 제주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사무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1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무는 제외한다.

1. 제13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관한 사항
2. 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⑯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 제주산재예방감독팀 관할구역 -----.

1. 제14항-----
2. 제13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5호, 제18호부터 제24호 및 제26호-----

<신 설>

3. 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4. 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⑰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업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2. ~ 11의3.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2의2. 제15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7호

3. 제13항제11호-----
4. 제17항제7호-----
5. 제17항제8호-----

⑰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1. ----- 신고사건 등 산업안전보건-----
2. ~ 11의3. (현행과 같음)
- 11의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활동, 교육, 홍보, 지도
- 11의5. 건설업 감독 총괄 및 실시, 건설업 패트롤 점검
- 11의6. 건설업 안전일터 신고센터 신고사항 처리 및 포상금

<신 설>

12. (생 략)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되, 강릉지청장 · 태백지청장 · 영주지청장 · 안동지청장 · 영월출장소장 및 서산출장소장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기지청장 · 강원지청장 및 울산지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고, 강릉지청장은 같은 규정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지급

11의7. 건설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아닌 중대재해 조사 및 수사 등 업무 일체 등

12.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지청장 및 출장소장) -----
----- 강릉지청장
----- · 태백지청장 · 영주지청장 · 안동지청장 및 영월출장소장-----

----- 강원지청장 -----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지역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청장(노사상생지원과를 두는 지청의 장은 제외한다) 및 출장소장은 근로개선지도과 또는 근로개선지도 1과에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센터 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로, 지역협력과장, 고용관리과장, 노사상생지원과장,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

제15조(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① -----

----- 노동기준조사과 또는 노동기준조사1과-----

② -----

-----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중대재해수사과장,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건설산재예방-----

⑥ 근로개선지도과장(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근로개선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개선지도1과장부터 근로개선지도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경기·성남·창원·울산·천안 지청의 근로개선지도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생략)

<신 설>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⑥ 노동기준조사과장(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를 포함한다) 및 노동기준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지청장은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노동기준조사1과장부터 노동기준조사3과장까지의 담당 지역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강남·경기·성남·창원·울산·천안 지청의 노동기준조사과장은 근로문화개선지원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무는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현행과 같음)

2. 노사상생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14조 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삭제

4. 노동기준감독과를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

나. 제14조제1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신 설>

3. 산재예방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팀을 두지 않는 지청 및 출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해당 지청 및 출장소의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다.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가. 제14조제8항제16호에 관한 사항

나. 제14조제10항제1호에 관한 사항

다. 제14조제12항제2호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마.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⑦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은 제14조제13항 각 호의 사항 중 별표 1의2에 따른 지청의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할구역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산재예방지도과장 및 산재예방지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역중대재해수사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및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의정부·경기·성남·울산·포항·전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산재

<삭 제>

⑨ 산재예방감독과장 및 산재예방감독팀장-----
---. 다만, 의정부·고양·성남·안양·평택·인천북부·울산·대구서부·포항·전주·여수·청주·천안지청의 산재예방감독과장은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지도과장이 분장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하며, 강원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강원·강릉·원주·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의 관할 구역에 대해서 제14조제13항제4호·제5호, 제5호의2 및 제7호의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삭 제

2. 제14조제14항제1호,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제14호의5 및 제15호에 관한 사항

3. 제14조제14항제11호의 사항 중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2. 제14조제13항제1호, 제3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25호에 관한 사항(제14조제13항제23호와 관련하여 광역시도청 소재 관서는 총괄 관리 및 협의 지원, 그 외 관서는 관할 사업장 감독 관련 협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단, 광역시도청 소재 관서에서 필요시 소속 지청 관할 사업장 감독 관련 협의 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3. 제14조제13항제11호-----

4.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5. 제14조제16항제8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신 설>

⑨ 건설산재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경기지청의 건설산재지도과장은 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구역 내 특별감독 및 결과 조치(건설업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한다.

1. 제14조제16항제1호,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3 및 제12호에 관한 사항

2. 제14조제16항제7호의 사항 중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을 제외한 사항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4. 제14조제17항제7호-----

5. 제14조제17항제8호-----

6. 제14조제15항제3호, 제6호부터 제7호에 관한 사항

⑩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은 ----- . <단서 삭제>

1. 제14조제17항제1호, 제3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3부터 7 -----

2. 제14조제17항제7호-----

제23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 ~ ③ (생략)

④ 삭제

⑤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삭제

②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8명(보건주사보 또는 간호주사보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267명(4급

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 .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② ----- 275명-----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2명, 6급 125명, 7급 12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① ~ ③ 삭제

④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둔다.

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⑥ ~ ⑧ 삭제

⑨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 125명, 8급 20명)-----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한시정원) 고용안정 업무

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4월 12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둔다.

⑩ 삭제

⑪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둔다.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고용노동부령 제68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 -----

2027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50	652	+2
·	·	·	
·	·	·	
일반직 계	643	645	+2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51	+5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50	<삭 제>	-50
·	·	·	
·	·	·	
전산주사	9	10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52	653	+1
·	·	·	
·	·	·	
일반직 계	645	647	+1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기록연구관	<신 설>	51	+5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50	<삭 제>	-50
·	·	·	
·	·	·	
전산주사	9	10	+1
·	·	·	
·	·	·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 직업상담주사보·공업주 사보·보건주사보·시설 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1</u>	<u>40</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973</u>	<u>8,008</u>	+1,035
일반직 계	<u>6,973</u>	<u>8,008</u>	+1,035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1</u>	<u>43</u>	+2
·	·	·	
·	·	·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u>4</u>	<u>11</u>	+7
행정사무관	<u>102</u>	<u>141</u>	+3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189</u>	<u>203</u>	+1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5</u>	<u>46</u>	+21

·	·	·	
행정주사	<u>978</u>	<u>1,123</u>	+145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93</u>	<u>219</u>	+26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34</u>	<u>399</u>	+65
·	·	·	
·	·	·	
공업주사·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94</u>	<u>104</u>	+10
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39</u>	<u>49</u>	+10
행정주사보	<u>1,061</u>	<u>1,239</u>	+178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32</u>	<u>572</u>	+140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08</u>	<u>500</u>	+92
·	·	·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u>135</u>	<u>155</u>	+20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 전주사보	<u>39</u>	<u>49</u>	+10
행정서기	<u>412</u>	<u>486</u>	+74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22</u>	<u>720</u>	+98
·	·	·	
·	·	·	
행정서기보	<u>132</u>	<u>145</u>	+13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 기보	<u>821</u>	<u>891</u>	+70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978</u>	<u>8,016</u>	+1,038
일반직 계	<u>6,978</u>	<u>8,016</u>	+1,038
고위공무원단	<u>6</u>	<u>7</u>	+1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41</u>	<u>43</u>	+2
·	·	·	
·	·	·	
서기관· 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시설사무 관 또는 전산사무관	<u>4</u>	<u>11</u>	+7
행정사무관	<u>131</u>	<u>170</u>	+39
행정사무관· 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 사무관	<u>193</u>	<u>207</u>	+14
행정사무관· 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25</u>	<u>46</u>	+21

·	·	·	
행정주사	<u>882</u>	<u>1,030</u>	+148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213</u>	<u>239</u>	+26
행정주사· 공업주사· 보건 주사· 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334</u>	<u>399</u>	+65
·	·	·	
·	·	·	
공업주사· 보건주사 또는 시 설주사	<u>94</u>	<u>104</u>	+10
공업주사· 보건주사· 시설 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39</u>	<u>49</u>	+10
행정주사보	<u>1,046</u>	<u>1,224</u>	+178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502</u>	<u>642</u>	+140
·	·	·	
·	·	·	
행정주사보· 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408</u>	<u>500</u>	+92
·	·	·	
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 또 는 시설주사보	<u>135</u>	<u>155</u>	+20

공업주사보·보건주사보·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 전주사보	<u>39</u>	<u>49</u>	+10
행정서기	<u>483</u>	<u>557</u>	+74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80</u>	<u>778</u>	+98
·	·	·	
·	·	·	
행정서기보	<u>135</u>	<u>148</u>	+13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 기보	<u>673</u>	<u>743</u>	+70
·	·	·	
·	·	·	

[별표 14]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서기보	<신 설>	<u>1</u>	+1
사무운영서기보	<u>1</u>	<삭 제>	-1
·	·	·	

[별표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5	34	+9
일반직 계	25	34	+9
·	·	·	
·	·	·	
행정주사	7	10	+3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신 설>	2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4	+4
·	·	·	
행정서기보	<신 설>	2	+2
사무운영서기보	3	1	-2
·	·	·	

[별표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
(제24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28	34	+6
일반직 계	28	34	+6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신 설>	2	+2
·	·	·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보건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신 설>	4	+4
·	·	·	
·	·	·	